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15 선고 2020나2067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6. 15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4. 24. 선고 2019가단105764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 - 제1심 판결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D와 피고들 사이에 2018. 3. 6.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하여 D에게, 피고 B은 배당금

149,285,24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, 피고 C은 배당금 83,701,848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.

항소취지 - 제1심 판결 취소. 원고 청구 기각.

## 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,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친다. 제1심 판결문 3쪽 4줄 ‘그러나 설령’부터 7줄까지를 ‘그러나 F는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(갑8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고합108 판결 - 항소 없이 확정)받았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’로 고친다.

제1심 판결문 3쪽 10줄 ‘갑 제2,4,5호증’은 ‘갑 2,4,5,7’로 고친다.

제1심 판결문 3쪽 17줄부터 5쪽 2줄까지는 ‘D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8. 3. 6. 무렵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(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)과 고양시 일산서구 T 소재 부동산(이 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등)은 결국 모두 경매되었다. 그 경매 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 부동산들은 합계 3,624,506,000원의 가치가 있는 반면, D의 채무 원리금은 그 부동산들의 가치를 초과하여 D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(피고들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K,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채무원리금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다).’로 고친다.

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.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